

2015. 8. 3.(월)
~ 8. 4.(화)/2일간

제27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목 차

1. 장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	4
2. 장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	4
3.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	5
4.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	6
5.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	7
6.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8
7. 장성군 먼지·소음·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안	9

심 사 결 과

의 안 명	심사결과
○ 장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먼지·소음·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안	원안가결

주요내용

1. 장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6. 12
- 제 출 자 : 차상현, 김옥 의원
- 제안이유
 - 「장성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」
- 주요내용
 - 목적, 기본이념 및 정의(안 제1조 ~ 제3조)
 -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(안 제4조)
 - 재능기부 사업 제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7조)
- 법적근거 : 「장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」, 「장성군 포상 조례」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8. 4.)

2. 장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7. 23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「지역문화의 계발·보존 및 활용 등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『지방문화원진흥법』에 의해 설립된 장성문화원의 지원.

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」

■ 주요내용

- 정의 규정(안 제2조) :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장성군을 그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함.
- 지원 범위(안 제6조) :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지원 범위는 사업보고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함.
- 사업보조금(안 제7조) : 지역문화의 개발·보존 및 활용 등 8개 사업
- 운영보조금(안 제8조) : 상근직원 인건비, 시설임차비,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- 법적근거 : 「지방문화원 진흥법」 제3조,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8. 4.)

3.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7. 23.

- 제 출 자 : 장성군수

■ 제안이유

- 「그동안 법령에서 정한 위기사유 외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원하였으나 「긴급복지 지원법」 2조 제6호가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” 로 개정되어 위기사유를 구체화하여 조례로 정

하고자 함」

■ 주요내용

-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(안 제3조)

- 입원·재가환자, 치매, 알콜중독자, 정신질환자, 임신, 출산, 아이 양육 등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급여 중지·신청 탈락·지원 결정전 가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14개 항목

- 긴급지원심의위원회(안 제5조)

- 기 능 : 긴급지원 연장, 적정성심사, 비용환수 결정
- 구 성 : 장성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기능 대체

■ 법적근거 : 「긴급복지 지원법」 (법률 제11512호, 2015.07.01.시행)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8. 4.)

4.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

■ 제출일자 : 2015. 7. 23.

■ 제 출 자 : 장성군수

■ 제안이유

-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군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체계적인 분석평가 절차를 규정하여 정책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궁극적인 양성평등을 지향하고자 함」

■ 주요내용
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(안 제5조)
- 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그 결과의 반영(안 제7조~제8조)
-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(안 제10조~제11조)
- 법적근거 :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3조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8. 4.)

5.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7. 23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~지방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체계확립을 위한 재난안전조직 강화
 - 한시적으로 설치한 규제개혁추진단을 과 소속 담당 단위로 편입
 -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
- 주요내용
 - 기구개편
 - 명칭변경 : 안전건설과 ⇨ 재난안전실
 - 담당신설 : 2개담당
 -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법무담당(기획감사실 감사법무담당분리, 규제개혁추진단 이관)
 - 경제교통과 차량등록담당(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분리)
 - 담당이관 : 기획감사실 대외협력담당 ⇨ 총무과

- 담당분리 :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담당 ⇨ 감사담당
- 담당통합 :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+ 여성가족담당 ⇨ 여성가족담당
- 한시기구 폐지 : 규제개혁추진단 폐지(기획감사실 규제개혁법무담당으로 편입)

○ 본청 직제순 조정

- 4~5급 정원인 부서 직제순 조정 : 재난안전실을 부서 직제순 2번째로 조정
- 기획감사실, 재난안전실, 문화관광과, 주민복지과..... 순으로

○ 업무담당 조정

- 청소년 업무 :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⇨ 평생교육센터
인재육성담당
- 평립댐 업무 : 평생교육센터 테마파크담당 ⇨ 산림편백과
녹지경관담당

○ 보건지소 신규설치

- 서삼보건지소 :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취약 지역에 신규지소 설치

■ 법적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 및 제30조(정원책정의 일반기준)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8. 4.)

6.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7. 23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「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~지방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 체계확립을 위한 재난안전조직 강화를 위한 인력확충」
- 주요내용 : 정원조정 : 583명 → 585명(증 2명)
 - 정원관리 기관별 · 직급별 정원표 중
 - 본 청 : 6급이하 증 2명(시설 9급, 방재안전 9급)
- 법적근거 : 「지방자치법(제112조)」
 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8. 4.)

7. 장성군 먼지·소음·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7. 21.
- 제 출 자 : 김희식, 고재진 의원
- 제안이유
 - 「우리군은 황룡강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생태적·문화적 자원이 풍부하여 친환경 녹색성장의 모범지역으로서,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가 어우러진 자연환경을 보기 위해 많은 도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지역이며,
 - 군민 또한 환경의식이 높아져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으나 먼지·소음·악취를 유발하는 일부 사업자나 군민들로 인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,

- 먼지·소음·악취 발생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단속과 사업자·군민들의 먼지·소음·악취를 줄이는 자율실천의식 함양을 통해 온 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.]

■ 주요내용
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
- 먼지·소음·악취방지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여부의 지도점검
-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·관 협조체제 구축 등

- 사업자의 책무(안 제4조)

- 군에서 추진하는 먼지·소음·악취 줄이기 시책에 적극 참여
- 먼지·소음·악취배출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 의무
- 군민·단체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활동과 홍보사업 협조

- 군민의 책무(안 제5조)

-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을 하면서 군민에게 피해를 주는 먼지·소음·악취 줄이기에 적극 참여

- 공사장 먼지·소음관리(안 제6조)

- 군수는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먼지 저감을 위해 수시로 청소하도록 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
- 군수는 사업자가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

- 특별관리 공사장(안 제7조)

- 군수는 건축물 축조, 토목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의 최소규모 10배이상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고 엄격한 기준을

적용

-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(안 제10조)

- 군수는 자발적인 소음 저감을 위해 300세대 이상, 부지면적 10,000제곱미터이상 공사장에 대하여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도록 권고

- 악취방지 조치 권고(안 제11조)

- 군수는 사업장의 악취 저감을 위해 청결유지 및 탈취제 살포 등을 이행하도록 권고
-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명령

- 지도·단속(안 제12조)

- 사업장 등에서 먼지·소음·악취 저감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
- 주거지역내 이동식 확성기 사용,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 부착 행위
- 그 밖에 먼지·소음·악취로 인하여 군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

- 공개 및 군민설명회 개최(안 제13조)

- 군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 내용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
- 각종 공사, 사업 활동 등으로 군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는 피해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

- 사업자의 자율참여(안 제15조)

- 먼지·소음·악취방지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·기술적 지원 가능

- 법적근거 : 「대기환경보전법, 소음·진동관리법, 악취방지법」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8. 4.)